Eunpyeong-Gu

V

금융 · 주거지원 · 집수리사업

55 은평구 상공인 자금지원
56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57 미소금융 대출지원
58 기타 융자사업 안내
59 주거급여 지원
60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6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62 전세 임대주택
63 매입 임대주택
64 영구 임대주택(아파트)
65 수선유지급여(집수리사업)
66 희망의 집수리사업
67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68 집수리사업 총괄



북한산 큰 숲, 내일을 여는 은평

55 은평구 상공인 자금지원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351-6834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구 분	내 용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 목 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업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대 상 : 은평구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있어야 함 ※ 제외업종 : 숙박 · 음식점업, 주점업, 담배 · 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 · 보험업 등 기타 사치향락 및 투기 조장업종 ○ 융자규모 : 50억원 ○ 융자내용 – 용 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지원한도 : 중소기업 3억원 이내, 소상공인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5%(2022. 12. 31.까지 한시적 이자 경감, 연 0.8%) – 상환조건 :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사업기간 : 2022. 1. ~ 융자규모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지방세 · 국세 완납증명서 등 ○ 지원절차(수시접수) : 담보평가(우리은행은평구청점) ⇒ 신청서제출 ⇒ 신청기업 현장실사 ⇒ 심의 ⇒ 대출
특별신용 보증지원	○ 목 적 :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등이 양호한 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 ○ 대 상 :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신용관리대상자, 국 · 지방세 체납자 – 유흥주점업, 담배도매업, 부동산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제외), 금융 · 보험업 등 기타 사치향락 및 투기 조장업종 ○ 보증규모 : 200억 원 ○ 사업기간 : 2022. 1. ~ 보증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용 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필요시 2억 원까지, 별도심사) – 보증비율 : 100% – 보증요율 : 0.8% – 접수장소 :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1577-6119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5, 6층) ○ 제출서류 : 특별신용보증추천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지방세 · 국세 완납증명서 등 ○ 지원절차 신용보증 신청 ➡ 심사 후 추천 의뢰 (재단 → 은평구) ➡ 보증 추천서 발급 (은평구 → 재단) ➡ 신용보증서 발급 (재단 → 기업) ➡ 대출 신청 (기업 → 은행 등) ➡ 대출
노란우산 희 망 장 려 금 지 원	○ 목 적 : 소기업 · 소상공인의 폐업 ·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제도 ○ 대 상 : 은평구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 제외대상 : 유흥주점, 무도장 ·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 ○ 사업기간 : 2022. 3. ~ 지원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매월 공제금 납입시 1만원씩 희망장려금 추가 적립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 지급(총 12만원 이내) ○ 지원절차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증빙서류제출(중소기업중앙회 및 취급은행 각 지점) **노란우산공제 사업 개요** ○ 납부금액 :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주기 : 매월 또는 분기(해당 분기내 3개월분까지 납부가능) ○ 가입기간 : 정해진 만기는 없으며 노령(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납부), 폐업,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 제도혜택 : 공제금 압류 · 양도 · 담보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단체상해보험 지원 ○ 가입방법 : 콜센터상담(1666-9988), 취급은행 방문, 인터넷 가입 등 ○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

56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351-8505~7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저소득층, 채무 취약계층의 재무진단 및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채무조정 등 실질적 자립 기회 제공으로 가계의 재무 건전성 회복에 도움
지원대상	은평구민,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 내용	○ **채무조정 상담** 채무자 상황에 맞고 실행가능한 해결안 제공 (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권 소멸시효 확인, 직접 협상 등) ○ **가정재무 상담** 가계 재무 건전성 진단 및 개선안 제공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통장시스템, 보험 다이어트안 제공) ○ **복지연계 상담** 구청, 주민센터, 긴급복지 및 복지 수급 연계 / 복지관, 복지재단 지원 연계 / 법률 상담 연계,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상담 ○ **현장상담 및 재무교육 등** 복지기관 방문 상담,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추심대응 방법 안내
이용안내	○ **대 상 :** 채무 및 재무상담이 필요한 은평구민 ○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개인별 맞춤 상담 진행으로 방문 전에 전화예약 필요함 ○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위치:** 은평구 은평로 245, 3층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내)
전화번호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351 – 8505~7

57 미소금융 대출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미소금융서울은평구지점 ☏352-0021

구 분	내 용
목 적	○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분들에게 무담보 · 무보증으로 소액대출사업을 실시하는 제도
지원대상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분 –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자(신용등급회사의 신용등급이 6 ~ 10등급 또는 무등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출종류	아래 표 참조 ※ 대출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됨.
융자절차	○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1397) · 미소금융 서울은평구지점(☎352-0021) · IBK미소금융재단 은평지부(☎6925-5100) ⇒ 신청 · 선정 · 대출지원 : 미소금융 서울은평구지점
기타사항	〈 **햇살론** 〉 : 미소금융 대출과 별개 서민대출 사업 ○ 대부업 등에서 연 20 ~ 27%대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 · 저소득 서민에게 6 ~ 8%대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서민대출(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 지원대상 및 지원종류 – 자영업자 : 사업운영자금(최고 2,000만원 한도), 창업 임차보증금(5,000만원 한도)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상환) · 보 증 료 : 대출잔액의 연 1%이내 ○ 상 담 : 서민금융진흥원 ☎1397

구 분		자금용도	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금리
창 업	신규창업	창업예정자에게 임차 보증금 지원	최대 7,000만원	• 6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연 4.5%
기존 사업자	운영자금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로 원재료 구입 등 자금지원	최대 2,000만원	• 5.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연 4.5%
	시설개선자금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로 사업장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최대 2,000만원	
	긴급 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 지원	최대 2,000만원	•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연 4.5%
전통시장 상인대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 으로 운영자금 지원	점포당 1천만원 이내 (단,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5백만원 이내)	• 2년 이내 일, 주, 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중 택1 • 대출금리 연 4.5%

58 기타 융자사업 안내

-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 사회연대은행 ☏ 2274-96379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구 분	내 용
기타 융자사업	○ 저소득층의 창업을 위한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서울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창업(희망)지가 서울시 소재이며, 만 20세 이상의 개인사업자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②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4,580원 이하, ③최근 3개월 평균 국민연금보험료 262,500원 이하 / 中 1가지 이상 해당) ‖ 실직자 (수급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 다문화가정(귀화 당사자) ‖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대출금리 : 연 1.8% (보증료율 0.5%) ○ 대출기한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은행 : 우리은행 ○ 지원내용 – 창 업 자 금 : 최대 3,000만원 이내(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 – 경영개선자금 : 최대 2,000만원 이내(사업자등록 6개월 경과)) ○ 지원절차 : 신청(사회연대은행) → 사전심사 및 보증추천(사회연대은행) → 신용보증 (서울신용보증재단)→자금지원(우리은행)→사후관리(사회연대은행)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신청방법 : 우편접수/방문접수(사전예약필수) ☎2274-9637 ○ 신청서류 :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http://www.bss.or.kr)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신청공고 〉 신청서 다운로드 ○ 주관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접수기관 : 사회연대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 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신청(공인인증서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지원분야 및 대상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 (다만,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2020년 259만원) 이하일 것.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0년 181만원) 이하일 것 – **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며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0년 181만원) 이하일 것 – **임금체불생계비 :**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노동자 또는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중위소득(2020년 5,700만원) 이하일 것(다만, 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전년 통계청「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 해당 금액 이상 체불된 경우) ※ 사업대상 근로자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종류 및 한도액 (※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2,000만원 한도)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한도 – 혼례비 : 1,250만원 한도 – 소액생계비 : 200만원 한도 – 임금감소생계비(감소임금 범위 내), 임금체불생계비(체불임금 범위 내) : 1,000만원 한도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1자녀 당 연 500만원 한도 ○ 융자조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이율 : 연 1.5% – 상환 :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다만,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임금체불생계비 1%)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 기타내용 – 융자종류별 세부요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각 사업내용 참고. (전화문의 : ☎1588-0075)

59 주거급여(임차급여)지원

• 생활복지과 주거복지팀 ☏351-7084

구 분	내 용
지원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 (2018. 10.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46% (단위 : 원) 1인: 894,614 / 2인: 1,499,639 / 3인: 1,929,562 / 4인: 2,355,697 / 5인: 2,771,277 / 6인: 3,177,222
지원내용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급 ○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함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 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 원) 1인: 327,000 / 2인: 367,000 / 3인: 437,000 / 4인: 506,000 / 5인: 524,000 / 6인: 621,000
지원절차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지원절차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소득 · 재산 등 조사(구청) ➡ 주택조사(LH공사) ➡ 보장결정(구청) ➡ 급여지급(구청) ※ 주택조사 :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계약관계 · 주택상태 등을 조사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 · 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 · 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및 필요시 기타 추가서류

60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 생활복지과 주거복지팀 ☏351-7085

구 분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사업
지원목적	○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지원
자격조건	○ 입주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완료 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SH에 추천한 자 ○ 적정성 심사기준(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①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분의 75 ② 재산합계액 :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이하 ③ 금융재산 : 800만원 이하
처리절차	① 지원요청 및 신고(신청인 → 동주민센터) ⇒ ② 지원대상자 선정(지자체 → 공사) ⇒ ③ 공급신청 안내(공사 → 지원대상자) ⇒ ④ 계약 및 입주안내(공사 → 선정된 입주자) ⇒ ⑤ 임대차계약 체결(공사 → 선정된 입주자) ⇒ ⑥ 입주(해당 주택으로 입주)
임대기간 및 기타사항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9회 재계약(2년단위) 가능 ○ 임대조건(※ 전국기준, 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상이)

구 분	전용면적	임대료 및 지원액
기존주택 매입임대	60㎡이하 (1인 50㎡이하)	- 1 인 가 구 : 보증금 180~618만원, 월임대료 6 ~ 35만원) - 2~3인가구 : 보증금 300~750만원, 월임대료 7 ~ 39만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85㎡이하 (1인 60㎡이하)	보증금 최대 12,0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5%), 월 임차료(연이율 1 ~ 2%)

구 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지원목적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침수우려 반지하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자격조건	○ 입주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반지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소득 등 재산요건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200만원,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초과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평균소득액 50%	2,248,479	2,906,622	3,209,283	3,600,405
월 평균소득액 100%	3,854,536	5,328,807	6,418,566	7,200,809

※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적용

처리절차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침수우려 반지하 등 비주택거주자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범죄피해자 : 지방검찰청에 신청, 법무부장관이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임대기간 및 기타사항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9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지원대상지역 : 입주희망지역 제한 없음

구 분	전용면적	임대료 및 지원액
기존주택 매입임대	60㎡이하 (1인 50㎡이하)	감정평가액에 따라 상이 (보증금 50 ~ 100만원, 월임대료 10 ~ 29만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85㎡이하 (1인 60㎡이하)	-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 : 보증금 최대 12,000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50만원), 월 임차료(연이율 1 ~ 2%) - 범죄피해자 등 : 보증금 최대 12,000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5%), 월 임차료(연이율 1 ~ 2%)

6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 생활복지과 주거복지팀 ☏351-7082

구 분	내 용
지원목적	○ 열악한 주거여건 ·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분리지급 하여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도모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 ·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 · **임차계약)**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지원인원수)** 동일 시 · 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 기숙사 ·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동일 시 ·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지원내용	○ 지역별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기준임대료 (1급지 서울 기준) (단위 : 원) 1인 327,000 / 2인 367,000 / 3인 437,000 / 4인 506,000 / 5인 524,000 / 6인 621,000
지원절차	○ 신청장소 : 부모가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 지원절차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소득 · 재산 등 조사(구청) ➡ 주택조사(LH공사) ➡ 보장결정(구청) ➡ 급여지급(구청)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청년분리지급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 · 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 · 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및 필요시 기타 추가서류

62 전세 임대주택

• 생활복지과 주거복지팀 ☏351-7085

구 분	내 용
지원목적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공사, SH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제도
입주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SH공사) :** 수시신청 및 지원 –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자 중 주거시급성이 인정되는 자 ※ 주거시급성 : 곰팡이 등으로 인한 거주환경저하세대, 재개발 등으로 인한 이주요청세대, 경매 등으로 인한 퇴거요청세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LH공사, SH공사)** –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자 ※ 제외대상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200만원, 개별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초과하는 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LH공사, SH공사)** –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재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서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자 · 신혼부부 I : 월평균소득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신혼부부 II : 월평균소득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1순위 :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2순위 : 현재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 원)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월평균소득액 70%	3,875,496	4,492,996	5,040,566	5,128,250
월평균소득액 90%	4,844,370	5,776,709	6,480,728	6,593,465
월평균소득액 100%	5,328,807	6,418,566	7,200,809	7,326,072
월평균소득액 120%	6,297,681	7,702,279	8,640,971	8,791,286

※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적용

구 분	내 용
처리절차	① 공급승인(국토교통부) ⇒ ② 모집공고(사업시행 공사) ⇒ ③ 신청 접수(동주민센터) ⇒ ④ 입주자 추천순위 산정(구청) ⇒ ⑤ 입주자 선정 및 발표(사업시행 공사) ⇒ ⑥ 전세계약체결(공사 ↔ 소유자) ⇒ ⑦ 임대차 계약 체결(공사 ↔ 입주자) ⇒ ⑧ 입주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기존주택	○ 호당 최대 1억 2,000만원 지원**(호당 1억 2,000만원의 95% 이내 : 최대 1억 1,400만원)** 예시) 1억 2,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600만원, 월임대료 190,000원
	신혼부부 I	○ 호당 최대 1억 3,500만원 지원**(호당 1억 3,500만원의 95% 이내 : 최대 1억 2,825만원)** 예시) 1억3,5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675만원, 월임대료 213,000원
	신혼부부 II	○ 호당 최대 2억 4,000만원 지원**(호당 2억 4,000만원의 80% 이내 : 최대 1억 9,200만원)** 예시) 2억4,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4,800만원, 월임대료 320,000원

○ 임대조건 : (본인부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월임대료) 전세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주택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서울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는 거주중인 자치구뿐만 아니라 당해 특별시 자치구내 다른 자치구도 지원 가능

63 매입 임대주택

• 생활복지과 주거복지팀 ☏351-7085

구 분	내 용
지원목적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공사, SH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 · 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제도
자격조건	○ 사업대상지역(해당 시 · 군 · 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1순위)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200만원, 개별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초과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월평균소득액 50%	2,248,479	2,906,622	3,209,283	3,600,405	3,663,036
월평균소득액 70%	2,890,902	3,875,496	4,492,996	5,040,566	5,128,250
월평균소득액 100%	3,854,536	5,328,807	6,418,566	7,200,809	7,326,072

※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적용

처리절차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신청서, 신분증, 도장)

○ 신청절차

입주 희망자 → (신청 접수) 동 주민 센터 → 시 · 구청 (입주대상자 심의 및 추천) → (통보) 입주자 최종 선정 (시행사) → (선정 통보) 입주 대상자

○ 입주자 선정
– 동일 순위 경쟁 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취업 · 창업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 청약저축 납입횟수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 동일 점수일 경우 최저주거기준미달 여부 점수 및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항목에 따른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기간 : 2년,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임대조건(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상이)
– 시중 전세금액의 30% 수준
예)전용면적 10.8 ~ 85㎡기준 : 임대보증금 25,050천원, 월임대료 262천원 수준

○ 기타사항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

64 영구 임대주택(아파트)

• 생활복지과 주거복지팀 ☏351-7085

구 분	내 용
지원목적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자격조건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③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처리절차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선정절차 입주희망자 → (신청 접수) → 동 주민센터 → (인터넷 청약신청) → SH공사 LH공사 → (계약 체결) → 입주대상자 ○ 제출서류 – 영구임대주택 신청서, 주민등록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등(해당자 한함) ※ 동 주민센터 담당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징구 불요
입주자 선정 및 입주계약	○ 입주자선정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별표 1]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의한 종합 점수 순에 의하여 선정 –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서울시 거주 기간, 가구원 형태 등 고려 ○ 기본 계약기간은 2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65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 생활복지과 주거복지팀 ☏351-7084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 수선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사업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 전년도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LH공사가 통보한 대상가구 – 긴급 수선가구에 대해 LH공사와 협의 후 대상 선정 –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 – 수선유지 급여의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기준 · 수급자격 확정 순 → 가구원 수 많은 순 → 소득인정액 낮은 순
지원내용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수급가구의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경 · 중 · 대보수로 구분)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주택개량 지원내용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등	지붕, 기둥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구분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 중위소득 35% 이하	③ 중위소득 46%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주택 노후도 평가	○ 현장실시를 통해 구조안전 · 설비 · 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 · 지반침하 · 지붕누수 · 벽체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 욕실 · 창호 · 단열 · 급수 · 난방 · 내선 ·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 천장 · 바닥 · 문틀 및 문짝 마감
추진절차	○ 전담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지원절차

주택조사	➡	연간수선 계획수립	➡	대상자 확정	➡	위 · 수탁 협약 체결 및 공사시행	➡	정산 및 평가
LH공사		LH공사		시군구		LH공사		시군구

※ 주택조사 :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계약관계 · 주택상태 등을 조사

66 희망의 집수리사업

• 생활복지과 주거복지팀 ☏351-7082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자력으로 집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대상가구	○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 제외 · 희망의집수리 지원 2년 이내 가구 제외 · 주거급여법 제8조 자가(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제외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매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주민 ○ 지원금액 : 호당 120만원 이하 ○ 지원항목 : 16개 공종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전기(LED, 화재경보기), 가림막, 제습기, 곰팡이제거 ○ 주 관 : 서울시
접 수 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추진절차	**예산교부** (서울시 → 은평구) ➡ **대상가구 추천 및 선정** (동 주민센터) ➡ **집수리내역 조사 및 견적산출** (은평구, 시공사) ➡ **월별 사업계획서 제출** (시공사 → 은평구) **공사시행** (시공사) ➡ **준공확인** (은평구) ➡ **사업정산** (은평구) ➡ **시공감리** (서울시)
주의사항	수혜자가 임차인일 경우 주택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공사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67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생활복지과 주거복지팀 ☏ 351-7082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저소득층에 단열, 창호공사, 보일러,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대상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 제외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2년 이내 가구 제외 · 주거급여법 제8조 자가(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제외 단,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없이 모두 지원 가능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매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 ○ 지원금액 : 호당 평균 200만원 ~300만원이내 ○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교체, 에어컨, 냉방기기 지원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접 수 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추진절차	**대상가구 접수 및 추천** (동 주민센터, 은평구) ➡ **대상가구 자격확인** (은평구) ➡ **방문조사** (시공업체) ➡ **지원내역승인** (한국에너지재단) ➡ **시공 및 물품지원** (시공업체) ➡ **모니터링 및 지원확인** (한국에너지재단) ➡ **사업정산 및 시공감리** (한국에너지재단) ➡ **하자발생 시 / AS요청**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주의사항	수혜자가 임차인일 경우 주택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공사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68 집수리사업 총괄

구 분	수선유지급여(집수리사업) (국토교통부)	슬레이트 철거 등 지원사업 (환경부)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익사업 (보건복지부)
사업목적	주택의 유지 · 보수 (주거급여법)	위해환경의 제거 (석면안전관리법)	장애인가구집수리 (장애인복지법)
지원대상	주거급여수급자중 자가 주택 보유자	슬레이트 지붕가옥 보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0 ~ 65이하 (자부담 30%)
지 원 액	보수범위별 차등 지원 (457만원 ~ 1,241만원)	해체 및 개량 가구당 352만원 이하	가구당 400만원 이하
지원성격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택의 유지 · 보수	일반적 재정지원	서울시 자체사업
지원내용	경보수 : 도배,장판 중보수 : 창호,단열 대보수 : 지붕,기둥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접근로, 현관,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 개조
처리절차	주택조사 및 수선 계획수립 (LH공사) → 심사, 선정(구청) → 사업시행(LH공사)	신청(구청 · 동주민센터) → 심사, 선정(구청) → 사업시행	신청(동주민센터) → 실사, 선정(협약기관) → 공사(시공업체)
시행부서	생활복지과 ☎351-7084	자원순환과 ☎351-7564	장애인복지과 ☎351-7316

구 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	희망의 집수리사업 (서울특별시)
사업목적	에너지 취약가구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에너지법)	취약가구 집수리(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 원 액	가구당 200만원 ~ 300만원 이하	가구당 120만원 이하
지원성격	한국에너지재단 전담(국비지원)	서울시 자체사업
지원내용	단열, 창호, 바닥 난방, 보일러교체, 냉방기기 등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샤시, 처마, 타일, 씽크대, 위생기구, 천정벽, 페인트, LED등 교체, 곰팡이 제거 등
처리절차	접수(동 주민센터) → 취합 · 신청(구) → 진단 · 결정 (시공업체) → 지원확정(한국에너지재단)	신청(동 주민센터) → 심사, 선정(구청) → 사업시행
시행부서	생활복지과 ☎351-7082	생활복지과 ☎351-7082